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

(제정) 2009.01.02 조례 제1720호

(일부개정) 2014.12.31 조례 제1921호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(일부개정) 2017.12.20 조례 제222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제27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,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20.>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"(이하 "공동시설"이라 한다)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2. "부양의무자"란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(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)를 말한다.
 - 3. "독거노인 "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.
 - 가.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
 - 나.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
 - 다.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
- 제3조(공동시설등록)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등록기준)** 제3조에 의한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1.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
 - 2. 경로당이 없거나,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
 - 3.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
 - 4.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
- 제5조(등록통보)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- 제6조(운영비 지원)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 - 1. 공동시설의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
 - 2. 공동시설의 냉·난방비 <신설 2017.12.20.>
 - 2. 연료비.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<개정 2017.12.20.>
 - 3. 삭제 <2017.12.20.>
 - 4.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<신설 2017.12.20.>
 - 5. 공동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<신설 2017.12.20.>
 - 6.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<신설 2017.12.20.>

[제목개정 2017.12.20.]

제7조(지원 시기)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- 1.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 분기 초에 지급 <개정 2017.12.20.>
- 2.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청 시 지급 <개정 2017.12.20.>
- 3. 삭제 <2017.12.20.>

[제목개정 2017.12.20.]

- **제8조(지원중단)**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 - 1. 이사, 전출,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
 - 2.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
 - 3.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
 - 4.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<신설 2017.12.20.>
 - 5.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<신설 2017.12.20.>
 -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.
- 제9조(서류비치) 시설에서는 회계장부, 영수증,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12.20.]

- 제10조(실태조사) 군수는 연 1회 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숙식 이행 여부 조사
 - 2. 서류 비치 여부 확인
 - 3.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

[본조신설 2017.12.20.]

- 제11조(위반 시 조치) 공동시설 위반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.
 - 1. 1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 조치
 - 2. 2차 위반사항 확인 시 경고 조치
 - 3. 3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설 폐쇄 및 등록 취소

[본조신설 2017.12.20.]

- 제12조(여가활동 서비스 제공) 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, 취미, 교육 등 성별·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12.20.]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<2017.12.20.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조례 제1921호 2014.12.31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조례2228호 2017.12.20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